2023년도 제1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3. 5. 8. 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김연희, 박재화,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8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86건(안건번호 제2023-31531호~3221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31531호~31566호(순번 1번~36번)는 뮤지컬의 무단 녹화 영상 등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이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31567호~31568호(순번 37번~38번)의 경우 동일 계정 및 동일 게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특히 순번 38번의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31569호(순번 39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중인 게시물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31570호~32216호(순번 40번~686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4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3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총 319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3-10192호~10510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3개에 접속할 수 있는 31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8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인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쪽수 기재 후 비공개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의 민원·권리자명 등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제2호 안건 모바일 앱 불법성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고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

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3-100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1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011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3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글 총 68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 블로그에 '♤♤♤ ♤♤ ♤♤♤♤', '▼▼▼,▼▼ ▼▼ ▼▼▼ ▼▼,▼▼ - ▼▼▼▼▼▼ ▼▼▼▼ ▼▼ ▼▼'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및 밀녹, DVD, 인터넷 중계 영상, OST 파일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순번 1번 내지 36번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는 점,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재 순번 37번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근거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되었으며, 순번 38번은 이용자의 탈퇴로 인하여 블로그가 폐쇄되고 데이터가 모두 파기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순번 37번의 경우 이미 제103조에 근거한 복제·전송의 중단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점, 순번 38번의 경우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저작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고 동일한 계정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재차 일어날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점 및 존재하지 않는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38번, 뮤지컬 영상 교환 및 판매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게시물이 삭제된 안건의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는데, 37번, 38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자에 의해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에는 게시자의 계정이 남아있고 계도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경고의 시정권고가 가능하지만, 37번의 경우 이미 시정권고와 동일한 삭제·전송중단과 경고의 효과가 달성되었고, 38번의 경우에는 계적이 삭제되어 시

정권고를 할 대상이 없는 경우라서 부결 의견을 드리는 것임.

- B 위원: 37번은 OSP에서 처리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OSP가 처리한 것임.

- C 위원: OSP는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제103조에 의해 확인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실무상으로는 권리자가 사업자인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 권리자는 권리확인이 비교적 쉽지 않다고 알고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36번은 삭제 및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7번 내지 38번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9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컴퓨터를 판매하며 온라인으로는 정품인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주장된 사안 총 1건임.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 의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는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됨. 실제 불법복제물을 설치한 컴퓨터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금번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컴퓨터를 구매하지 아니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및 사용할 수 있는 점, 각 원저작물인 소프트웨어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9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프로그램을 전송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이러한 종류의 안건은 처음 보는 것 같음.

- D 위원: 해당 안건은 아무나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점이 기존과 다른 것 같음.

- C 위원: 게시자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도 게시물에 접근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컴퓨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회원가입 등의 다른 절차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 B 위원: 소프트웨어의 버전만 맞으면 누구나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임.

- D 위원: 해당 파일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크랙' 파일로 보임. 다만 최근의 프로그램 라이선스는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어 있어서 해당 크랙이 계속하여 작동할지는 미지수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에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9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0번 내지 68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94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3번은 웹하드에서 제공중인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임. 2023. 4. 26.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으로 제공중임.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98번은 영화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로, 2023. 3. 29. 극장 개봉하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

드로 제공중인 사안임.

(영화 ‘파벨만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74번은 영화 ‘파벨만스‘임. 2023. 3. 22.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2시간 반 분량을 판매중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40번부터 686번까지 총 942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0번부터 68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31531호~31566호(순번 1번~36번)에 대해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안건번호 제2023-31567호~31568호(순번 37번~38번)에 대해 부결, 안건번호 제2023-31569호(순번 39번)에 대해 가결하고, 그 외 안건번호 제2023-31570호~32216호(순번 40번~686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10192호~10510호(순번 1번~319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0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15.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